

학칙시행세칙 II

제정 2007. 2. 1

개정 2014. 3. 1

개정 2017. 3. 1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을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칙 제82조에 따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에 관한 학칙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따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과이수 및 수료기준) ① (삭제 2014.3.1)

② 해당 학년에서 정한 전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상급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.

③ (삭제 2014.3.1)

④ (삭제 2014.3.1)

⑤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의예과에서 개설된 전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학장이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필수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.

⑥ 의학과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장이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필수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.

⑦ 의과대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의예과 및 의학과 수료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정할 수 있으며, 필수과정의 추가 및 삭제 등과 같은 변경에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.

제3조(종합시험 및 실기시험) 학장은 일정한 시기에 기초의학종합시험, 임상의학종합시험 및 임상실기시험(OSCE, CPX 등)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러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개시 전에 대상학년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3.1)

제4조(평균평점) (삭제 2014.3.1)

제5조(학사경고, 유급 및 제적) ① 의과대학 의학과(의예과 포함)의 학사경고, 유급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. (개정 2017.3.1)

② (개정 2014.3.1)(삭제2017.3.1)

1. (삭제 2014.3.1)

2. (삭제 2014.3.1)

3. (삭제 2014.3.1)

③ (개정 2014.3.1)(삭제2017.3.1)

④ (삭제2017.3.1)

제6조(휴학) ① 일반휴학은 매 학기 기말고사 개시 전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

② 휴학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I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
③ 의예과의 경우는 휴학한 학기, 의학과 의 경우에는 휴학한 학년의 기준에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.

제7조(복학)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I에서 정한 절

차를 따른다.

② 임상실습을 하는 학년(의학과 3, 4학년)은 제1학기에만 복학이 가능하다. (개정 2014.3.1)

제8조(통합교육과목의 시험 및 성적) ① 통합과목이란 단일 교과목에 2개 교실 이상의 소속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는 과목을 말한다.

② 의학과에 개설된 통합교육과목의 시험은 해당 과목의 종료 후 교육과정에서 정한 일 시에 시행한다.

③ 통합교육과목의 성적은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기의 기말성적에 포함된다.

제9조(졸업종합시험) ① 학칙 제35조에서 정한 졸업논문 대치제도로서 의학과 4학년 2학기에 졸업종합시험을 시행한다.

② 졸업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한다.

③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보류하며 다음 학년의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한 자에 대해서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세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성적 환산표 (삭제 2014.3.1)